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(안)심사보고서

1998. 12. 14.
총무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8년 1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58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 ('98. 12. 14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조 병 하

가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상한 연령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되어 제정시행 되어오던 동 조례가 그간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내용이 미흡했었으나 금번에 휴직명령, 휴직기간, 휴직의 효력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휴직명령, 휴직기간, 휴직의 효력 명확화(안 제9조, 안 제9조의 2, 안 제9조의 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 관 수)

- 동개정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규정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- 안 제9조의 개정내용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종전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본문내용을 일부 개정하고, 안 제9조의 2와

안 제9조의 3을 신설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일 경우의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 안 의 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1998.11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상환연령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되어 제정시행 되어오던 동 조례가 그간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내용이 미흡했었으나 금번에 휴직명령, 휴직기간, 휴직의 효력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개정골자

휴직명령, 휴직기간, 휴직의 효력 명확화(안 제9조, 안 제9조의2, (안 제9조의3)

3. 개정근거

- 지방공무원법(1998. 9.19 법률 5568호) 제2조제3항제, 제4항
- 지방자치법(1996. 12.29 법률 제5069호) 제15조, 제103조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 (휴 직)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.

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 (휴직기간)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.

제9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휴직)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9조(휴직) 임용권자는 고용직 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수있다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(휴직기간)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 까지로 한다.</p> <p>제9조의3(휴직의 효력) ①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②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일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</p>